

7. 주요 연락처

한국 공대위 숙소 :
 오스트리아 센타 : 안내전화) 0222) 2369-0
 민간단체 JPC : 504-4677 팩스 504-4679
 한국대사관 : 전화 216-3441
 주소 1020 Vienna, Praterstrasse 31.
 앰블런스 - 114, 경찰 - 133

8. 기타 상식

- 화폐 : 1 실링 = 약 72원, 1달러 = 11.4실링
- 기온 : 6월에는 밤 10도 - 낮 28도, 평균 18.5도
- 점심식사 : 12 - 2 시, 저녁식사 6시 이후, 봉사료 계산서에 포함됨.
- 나라상식 : 9개주 연방제, 비엔나는 주이면서 연방수도, 공화제, 연방대통령은 Thomas Klestil, 연방의회 수상은 Franz Vranitzky, 양원 의회제(183,63석), 사민당(80석) 민중의당(60) 자유당(28) 녹색당(10) 자유포럼(5), 로마가톨릭(78%) 개신교(5%), 인구 7백86만명, 비엔나 인구 1백53만명 - 서양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센타 옆에는 많은 국제기구 건물이 위치함.
- 대표적 문화명소 : 비엔나 박물관 (인권대회 참가자는 무료).
- 여행자수표 TC 는 수수료가 매우 높음 (약 20%)

9. 일정

- 6월 5일 : 아태 NGO 소지역담당자 회의, 접수, 숙소확인
- 6월 8일 : 숙소확인, 숙박준비물 확인, 추가 준비, 장보기.
- 6월 9일 : 대표단 출국, 비엔나 도착
 ASIA-PACIFIC NGO FORUM - 4-5명 참석
- 10 - 12 : NGO FORUM - 전원 참석
- 14 - 25 : 본회의 참석 - 6-7명
 병행행사(전시,문화행사,교류) 진행
- 19 - 20 : 전체문화행사/문화행진
 - 본회의 인원일부 제외 전원참석
- 6월 24일 밤 : 총평가
- 6월 25일 : 후속활동, 조사(?), 관광.
- 6월 26일 : 대표단 귀국

B.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경과

1. 세계인권대회 본회의(6월 13~25일) 경과보고

1) 초기의 문제들

종종 이번 세계인권대회와 비교되는 리우 환경회의가 지구를 보호하자는 세계회의였다면 이번 회의는 인간을 보호하자는 세계회의였다. (참고로 1995년에는 개발전략을 재검토하는 세계회의가 개최된다) 그러나 인권대회는 준비회의(PrepCom)의 난항으로 인해 초기의 기대감이 오히려 반전된 가운데 개최되었다. 비인에서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기 직전 열렸던 민간단체회의에서의 혼란과 그 이전 마지막 준비회의(4차 PrepCom)의 실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번 비엔나 회의가 결과없이 끝날 것이라는 어두운 예측을 하고 있었다. 한 예로, 비엔나에 도착한 국제사면위 사무총장 베에르 싸네는 정부들이 보여준 무관심과 정치적 의지의 부족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을 정도이다.



이번 회의가 리우 환경회의와 다른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비엔나 인권대회에서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정부 자체라는 사실이었다. 이것이 이번 인권대회를 매우 어렵게 만든 핵심 이유였다. 심판대상이 애매했던 리우 환경회의가 환경문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의 수준으로 설정된데 반해, 비인 인권대회는 당연히 외무장관 수준으로 낮게 잡혀졌다. 사실상 외교적 조정의 문제로 처음부터 설정된 것이다. 이 점은 인권에 대한 세계 각국정부의 평균 기대치를 반영한 것이다. 인권문제는 환경문제와 달리 언제나 정치적인 문제였고 정부의 책임이 거론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치적 협상이 불가피한 주제이기도 했다. 세계인권대회의 중심행사인 정부간회의 즉 본회의는 이런 딜레마의 늪에서 시작되었다.

소극적이고 꺼려하는 정부들을 국제인권회의의 자리로 끌어내린 장본인들은 사실 민간인

권운동단체들과 유엔등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인권전문가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등 지역회의(비엔나회의의 준비회의의 일환)에서 종합적이고 진보적인 인권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을 시종일관 주도했으며, 성사 자체가 의심되던 이번 인권대회가 가능하도록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민간분야에서 처음부터 제기한 문제의식은 이렇다.

-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방향을 잡기위해서 인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유엔의 조기경보 체계의 필요성
- 인권보호를 위한 유엔 비상조치를 가능케 하는 정부들의 의지와 협조의 필요성
- 유엔의 평화보장활동에 인권보호조치를 필히 포함시키는 것
- 여성, 아동, 선주민에 대한 권리보장을 조속히 실시하는 것
- 각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감독하고 촉진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
- 유엔의 인권활동 확대발전을 위한 여건(재정, 권한, 인원)을 확보하는 것

대부분 준비없이 참여한 정부들이 진행한 본회의는 사실 이렇게 미리 주어진 문제의식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정치적 협상을 전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2) 진행경과

본회의는 각 정부가 온갖 수사학을 동원해 그럴듯한 입장을 밝히는 지리한 전체회의(Plenary)와 논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본위원회(Main Committee), 그리고 최종 선언문을 기초하는 문안기초위원회(Drafting Committee)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중 실질적인 협상과 갈등이 일어난 회의는 실제 가장 중요했던 문안기초위원회였다. 문안기초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킨 논쟁과 비난, 배후협상과 로비가 집중된 현장이었다.

<민간단체 참여의 범위>

본회의가 있기 전부터 그리고 본회의 초기의 쟁점은 단연 민간단체의 참여허용 범위에 관해서였다. 유엔의 회의절차에 관한 논의에는, 목소리를 내려는 민간단체들이 너무 많으며 그 내부 협력체계가 산만하며 유엔의 운영상 정부대표에게 절대 우선권이 있다는 논지로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상당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정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 이에 대해 본회의가 있기 이전 민간단체 회의(NGO Forum)에서 민간단체들은 유엔의 합의와 무관하게 필요한 경우 각국의 구체적 인권침해사실을 언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또 정부간회의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초청건이 중국정부의 압력으로 취소되는 등 민간단체에 대한 압력이 본회의 시작 이전부터 가시화되었고 또 가장 중요한 문안기초위원회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아예 배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본회의 초기부터 교착상태에 빠졌다. 일례로 합의가 안된 200개 이상의 문안중에서 단 하나만이 첫날 하루종일의 토론에서 합의되었다.

<인권의 보편성 논쟁>

민간단체의 참여문제가 “달라이 라마 초청 허용, 나라상황 언급 불가, 전체회의시 최대한 발언기회 부여, 문안기초위원회에서 단 1회의 의견개진 기회 부여”로 절충적으로 마무리된 후, 본회의의 두번째 싸움은 서방과 아시아 일부 국가간의 인권의 보편성 논쟁으로 접어들었다. 이 갈등은 회의시작 3일째 미국이 중국등 일부 아시아국가(북한 포함)를 겨냥해서 “일부 극소수 국가들”이 비엔나선언의 문안기초 작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처음부터 이 방해작업의 최전선에 서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극화되었다. 또 상당수의 서방 언론은 중국이 비엔나회의가 성과없이 끝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일종의 사보타지선전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중국은 상당수의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으며 중국이 인권의 보편성 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에 의견을 달리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인권규정의 적용방식’의 문제가 의미하는 바는 어떠한 보편적 인권규정이라도 각국의 국법(국가의 주권 규정)에 의거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권우선의 원칙을 의미한다. 주권문제는 비서방국가들의 관심사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쟁점화되지는 않았지만, 서방의 많은 나라들도 소수인종과 선주민들이 주장하는 자결권에 대해 기존 국가의 주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본회의의 초기 갈등은 발전된 국제질서의 필요성인가 아니면 기존 국가주권의 온존인가 사이의 갈등이었는데, 이에 대해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가진 나라들은 전자를 내세운 것이며, 방어적인 나라들은 후자를 내세운 것 뿐이다.

<이슬람국가들의 공동전선>

서방국가들이 미국의 주도하에 중국등 일부 아시아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협공을 하고 있을 때, 이슬람국가들은 보스니아사태에 대한 서방의 체계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참을성을 잃고 있었다. (참고: 이슬람국가들에서는 보스니아사태를 서방의 묵인하에 저질러지는 기독교계의 회교도 말살책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유는 첫째, 유엔이 합의한 ‘일국의 구체적 상황 언급 불가’ 원칙을 준수하더라도 보스니아사태는 단순한 일국상황이 아니라 심대한 국제적 인권침해상황이라는 점과 둘째, 문명(종교)간 갈등을 서방의 영향력으로 덮어두려는 의심이 제기된다는 것이었다. 이슬람국가들은 이슬람협의기구(IOC: 회원국 51개)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이번 인권대회에서 인종말살책동에 대한 비난과 유엔의 무기금수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보스니아사태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슬람국가들은 - 능숙한 외교 감각으로 - 이런 주장이 마치 인권대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사보타지전술로 비추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후교섭에 주력했다. 결국 이슬람국가들은 미국과 영국등의 저지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교승리를 거두어 본회의 폐막 하루전인 6월 24일, 재석 143표중 찬성 88표 반대 1표 기권 54표로 특별결의문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한다. 결의문 통과가 선언되는 순간 보스니아대표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 기쁨의 울음은 다른 한편 미국등 서방의 인권외교의 한 실패를 상징한 것이기도 했다.

<인권고등판무관제의 신설>

비엔나대회가 시작되기 전, 많은 인권단체들은 국제사면위가 공식 제안한 인권고등판무관제가 이번 회의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 문안기초위원회가 이 주제에 대한 논의와 협상을 시작한 것은 6.25일 새벽이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200여가지의 불일치점에 대한 사소한 타협을 찾는데 모든 일정을 소비한데 있었다. 그러나, 다른 이유도 존재했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슬람국가들은 이미 미국등 서방이 주도하는 유엔의 체제아래서 인권판무관은 서방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이며 이 제도 역시 서방의 인권정치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같은 비판적 견해는 유엔에 비판적인 인권단체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 여기에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반대의견 역시 비중있는 견제로 작용했다. 즉 갈리 사무총장은 새로운 제도보다는 사무차장을 한 명 더 두어 인권관계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확대하는 책임을 주자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였는데, 유엔을 강화하는데 은근히 반대하는 강대국들도 이 의견에 우호적이었다. (현재 흐뜨러진 국제질서에서 권한이 강화된 유엔보다는 강대국이 쉽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느슨한 유엔이 더 구미에 맞았던 것이다) 이렇듯 유엔의 민주화라는 매우 어렵고 비현실적인 주제와 연관된 인권판무관제에 대한 논의는 시간상의 제한이라는 명분을 얻어 차기 유엔총회에서 검토하자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절충되어 마무리 되었다.

3) 본회의가 남긴 것들

지금부터 2년 6개월전 유엔이 세계인권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이 세기적 모임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이 회의를 주관한 사람들이 이 회의가 세계질서의 변동을 기념하리라는 희망을 표시했다. 그러나 평화스런 탈냉전시대에 대한 전망이 무너지고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갈등과 전쟁이 발발하자 비엔나회의에 먹구름이 드리기 시작했다. 그 먹구름은 비엔나회의의 내내 가시지 않았다.

이번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 모임은 현재 인류의 인권상태를 정확히 나타내는 잣대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보스니아사태와 선주민의 권리, 남북간의 갈등과 아시아 대 서방의 갈등, 정부들의 무능력과 민간단체들의 선도적 역할 등은 현재 세계사가 인권보장을 위한 도정에 어디쯤 와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3-1) <공통 인식>

은갓 논쟁과 견해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엔나회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에 대한 공동인식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1) 유엔의 역할과 기능

- 유엔은 현재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인

권활동을 중심으로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

- 유엔은 인권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하며, 각 회원국의 책임과 역할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유엔은 민간단체들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 유엔인권센타가 앞으로 매년 각국 인권상황을 다룬 종합적인 인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해야 한다.

(2) 정부의 역할과 책임

- 회원국 정부는 인권제도의 개혁, 인권증진활동, 이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임해야 한다.
- 유엔개혁을 주장한 정부들은 자국내 인권증진에 대해 남달리 노력해야 한다.
- 정부는 인권문제를 다른 정치적 경제적 문제와 연관시켜 희석화해서는 안된다. 개발과 민주주의가 인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해도 이는 각각 별도로 고찰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 민간단체(비정부단체)의 역할

- 각국 및 지역차원 민간단체들은 서로의 협조를 높이고 유엔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현재 정부들간의 견해차이와 이해관계의 불협화음을 고려할 때 특히 현재의 시기에 민간단체들이 인권문제를 전면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해야 한다.
- 민간단체들은 인권 A,B 규약에 나타나 있는 인권의 이상적 목표를 아무 현실적 구애없이 적극 설파하는 역할을 가진다.

초기의 우려와는 다르게 이러한 공동인식이 형성되면서, 비엔나회의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의 절충과 협상을 거쳐 공식 선언문인 「비엔나 선언과 행동 강령」을 채택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선언문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한 평가 (사실상 국제인권운동의 퇴보라는 평가)로부터 조용한 만족까지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인권대회의 진행사항과 선언문의 내용만을 기초로 해서 볼 때, 회의의 마지막 날인 6월 25일 밤 11시 55분경 폐회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다음과 같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남겼다고 요약할 수 있다.

3-2) <성과>

- 무엇보다도 일정하게 새로운 내용을 담은 비엔나선언을 채택하는데 결국 성공하였다.
- 인권보장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각국 정부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 인권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각국 혹은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인정하였다.
- 빈곤에 의한 인권침해를 강조하고 개발(발전)의 권리를 확하였다.
-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 인권고등판무관제의 우선적 검토를 유엔 총회에 권고하였다.

- 민간단체들이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중대한 의의를 더한층 강조하였다.

그러나, 절충에 실패하여 담보되거나, 최소한의 진전도 보지 못한 실패의 측면도 적지 않다.

3-3) <답보>

- 최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난민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언급이 없다.
- 인권고등판무관제와 더불어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던 국제사법재판소 신설에 관한 합의에 실패하였다.
- 기타 위 성과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

3-4) <실패>

- 유엔인권센타의 예산증대와 인원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실패하고 추상적 원칙만 합의하였다.
- 인권고등판무관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유엔총회로 이관하였다.
- 개발과 인권의 연관속에서 남북간의 빈부격차가 증대하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책임이 불충분하게 언급되었다.
- 비엔나회의는 선주민의 10년을 선포하고 그 중요성을 공언했지만, 다른 한편 선주민들의 자치권에 반대하는 미주대륙 및 태평양지역의 국가들로 인해 비엔나선언에 선주민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문항을 삽입하는데 실패하였다.
- 문안기초위원회에 민간단체들이 배제되면서 문안기초작업이 구체적 상황과 인권철학에 의거하기 보다는 정부간의 정치적 협상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 소수층(인종,종교집단 등)의 자결권이 기존국가의 주권에 비해 과소평가되었다.

그러나, 비엔나 정부간회의를 종합해 볼 때 지구상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정부들은 최근 악화되는 인권현실-7월 8일 발표된 국제사면위의 1992년 인권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에 대해 전혀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못했으며 또 과거에 합의된 것 이상의 새롭고 진일보한 내용을 선언문에 담는데 실패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대표들이 보여준 무능력과 준비부족 그리고 협소한 이해타산의 외교방식은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질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대외정책상의 무능력과 혼란, 그리고 G7회담이 최근 받고 있는 가까운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냉전이후의 세계질서를 추동하는데 기존의 정부중심 협의체계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일 것이다. 비인 인권대회는 이런 맥락에서 이로부터 지구의 환경과 인간존엄성을 지키는 일을 현존국가와 정부에만 맡길 수 없으며 그러므로 새롭고 대안적인 담당자들과 새로운 차원의 국제관계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도 할 수 있다.

2. 민간단체회의(NGO FORUM) 경과보고(6월10일-12일)

1. 민간단체회의(NGO Forum)와 타 행사 대한 개괄설명

(1)민간단체회의 (NGO Forum) 1993. 6.10 - 6.12

본회의에 앞서서 전 세계에서 보인 민간단체들간의 공동요구와 전략을 모색하는 회의로서 회의 운영방식, 본 회의에서 행할 민간단체 주요 연설에 대한 조정, 작업팀의 구성, 요구사항 채택, 결의문 채택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작업그룹(Working Group)은

1)유엔인권기구와 제도에 대한 평가팀 2) 소수민족과 원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분과 3) 여성의 권리를 위한 분석 4) 인권과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를 관계연구 및 남·북 민간단체간의 연대방안을 위한 분과 5)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 민족, 종교적 배타주의에 의한 인권침해와 극복 방안 분과로 구성하여 전세계 인권실현을 위한 연구팀 으로 5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었고, 후에 다양한 단체와 개인의 문제제기로 고문등의 몇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것들에 대한 그룹이 구성되었다.

병행행사와 박람회(NGO Parellel Activity & NGO Fair, 6.14-6.25)는

본 회의 기간중에 전세계에서 모인 인권단체들이 주요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공동 인식의 확보와 문화교류를 위해 진행되는 것이며 이 행사에서는 1,000여개가 넘는 민간단체들이 공동 혹은 개별적인 형식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이나 주요인권 침해에 대해 다양한 방식과 매체로 호소하게 되며 특히 기간중인 20일에는 참가자 모두가 각국의 고유한 의상이나 상징물들을 갖고 참가하는 "인권, 민주주의를 이한 문화행진"도 계획되어 있었다.

먼저 NGO 전체회의는 참가 신청한 모든 민간단체를 포괄하여 가장 넓은 회의장에서 3일간의 회의가 있었다. 먼저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각 작업팀별로 본회의에 제출할 NGO의 결의문에 포함될 내용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토론과 발표 그리고 전문적인 사회자의 조정에 의해 정리되어 후에 제출되었다. 분과토론은 비엔나 선언의 진보를 위해 각 지역선언문에 기초한 내용부터 각국, 단체들이 실천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수 많은 의견이 쏟아졌다. 공대위의 성원들은 등록시 5개분과를 고루 선택하여 각 분과에 참여하였다.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어서 전체회의의 난항을 거듭하는 모습과는 상관없이 진행되었다.

나. 회의 진행과정

민간단체회의를 각국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본회의에 견주어보면 각국 정부가 회의의 대표로 참가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인권유린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라는 모순을 집어내고 인권

의 진일보를 위한 민간 주체들이 활동을 집약하여 적극적으로 각국을 압력하는 준 정부들의 회의라 할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의 눈부신 활동에 비추어 비엔나 현지에서의 민간회의는 대표성문제와 다양한 쟁점에 대한 사전 공감의 부족등으로 공동전선을 형성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각기의 단체들이 목소리가 형형색색으로 뒤섞여 정리되지 못하고 빛으로 변화하지 못했다고나 할까?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는 6월10일에서 12일까지 3일동안 NGO회의 가 열렸다. 이 회의는 세계 각지역 NGO들의 의견을 모아 세계인권대회의 최종결과에 NGO들의 입장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 NGO회의의 운영기술적인 준비는 1992년 12월에 이 대회준비를 위해 성립된 JPC (JOINT PLANNTNG COMMITTEE)가 주관하고 있었다. JPC는 유엔산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자문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제네바와 뉴욕에 위치한 국제인권 NGO들의 상설기구인 CONGO 인권위원회,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루드비히 볼트만 인권연구소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 중미, 아시아 & 태평양 지역회의에서 결성된 각 지역 조정위원회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세계 5대륙에서 온 2,000여개의 NGO들을 협력, 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JPC는 대회 첫날부터 남



부터 호된 비난을 받아야 했다. 남남지역 NGO 들은 NGO회의를 준비하면서 JPC가 보인 운영 기술상의 미숙함은 사실 남남지역 NGO등을 소외시키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아프리카 NGO들은 약속한 재정지급의 지연으로 원래 참가할 예정이었던 140여개의 NGO 들중에 약 40-50여개의 NGO들만이 이 회의에 참가할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는 아프리카 NGO들을 제외, 소외시키려는 고의적인 "사보타지"라고 말하였다.

아시아 &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 중미지역의 남남지역 NGO들은 또 JPC가 NGO회의와 세계인권대회 본회의에서 자국의 인권문제를 조명하려는 인권NGO들의 노력을 제지하고 있다는 것과 중국정부의 압력으로 티벳, 달라이라마의 초청연설이 취소된 점을 강력히 항의하는 데모를 벌였다. 세계 각 지역에서 모인 NGO들은 회의의 마지막 날인 6월 12일, 회의장소인 오스트리아 센터에서 풍물장단과 함께 "NGO를 제약하지 말라" "달라이라마를 연설하게 하라" 는 구호가 적힌 만장이 펼쳐 거리는 가운데 한 목소리로 NGO의 권리를 요구하였다. 한 NGO대표는 "JPC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너무나 타협적이어서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기본원칙마저 잊어버리고 있다"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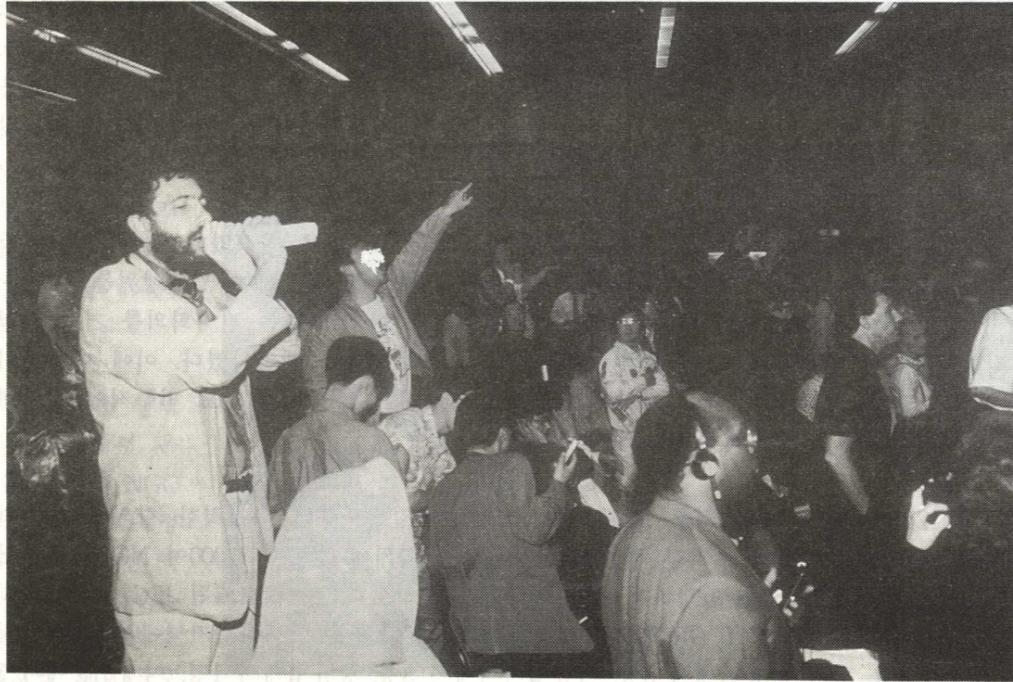
너무나 타협적이어서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기본원칙마저 잊어버리고 있다" 말하였다.

회의가 진행함에 따라 JPC의 문제는 좀더 근본적인 성격으로 변화였다. 즉 JPC는 행정 책임만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주요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월권행위를 보였다. JPC가 NGO들의 동의도 없이 주요보고자를 지명하고 또 이 보고자는 지역회의를 거쳐 수립된 각지역 NGO 문건들보다는 자신의 견해에 근거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남남지역의 NGO들은 즉각 각지역의 회의를 열어 JPC를 퇴진시키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NGO들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하였다.

6월 12일 오후에 열린 최종 NGO 전체회의에서 밑으로부터의 강력한 항의에 불착한 JPC는 조직운영상 혼란을 야기한 점을 공식사과하고 회의에 참여한 2,000여 NGO들로부터 지지와 합법성을 잃은 점을 인정하며 자진 해체를 선언하였다. 이어 해체된 JPC 대신 그 역할을 맡을 NGO CONTACT GROUP이 성립되었다. 이 그룹은 아프리카지역에서 3명, 아시아지역에서 3명, 남미와 중미에서 3명, 서유럽지역에서 3명, 동유럽에서 1명, 여성부문에서 3

명, 장애인문제에서 1명, 선주민대표에서 3명, 무국가민족(쿠르드족이나 시크족 등)대표 2명, 아동문제대표 1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카터사건: NGO회의 연사로 등장한 지미 카터와 분노한 NGO들이 NGO회의는 폐회식의 마지막 연사로 미국 전대통령 지미 카터가 등장하면서 항의와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을 맺었다. 지금은 거대한 인권단체의 설립자가 되어 나타난 전 미국대통령에게 NGO들은 적대적인 태도로 즉각 퇴장을 요구하였다.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남미와 중미의 NGO들은 그들이 카터 개인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써 전세계의 수많은 인권침해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의 힘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카터의 NGO회의 연설 및 폐회선언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마요광장"의 어머니들은 거의 만명의 아르헨티나인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되었던 1985년의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기억하며 분노를 외쳤다. 이 어머니들은 살해당한 가족의 이름을 수놓은 하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카터를 향해 "살인자"라고 외쳤다. 이들과 더불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지역의 NGO들도 항의에 동참하였는데 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NGO대표는 이 카터사건이야말로 다수 인권단체와 민중들의 감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 폐회식에는 원래 199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과테말라의 리고베르다 멘추여사가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심각한 과테말라의 자국사정으로(체포설도 나돌았다) 참석이 불가능해지자 JPC는 전직 미대통령 지미 카터를 초청하였다.



다. 비엔나 이후의 계획

- 내용

인권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긴밀한 연락-협조관계를 통해서 공동 인권 운동강령을 기초하고 나아가 인권침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활동과 국가인권기구의 설치과 그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으며, 유엔의 민주화와 고등인권관무관제와 인권형사재판소 설치를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민간단체들간의 세계적 지역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그 원칙으로

- 1) 수평적/ 민주적, 개방적, 분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 2) 인권, 민주화, 개발에 관계된 모든 민간단체를 포괄하도록 노력하며
- 3) 여기에 관심있는 전문가, 학자, 기타를 포괄하도록 노력하며
- 4)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광범위한 연대체, 협의체, 기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한다

- 구조

- 1) 위의 임무를 지도 수행하기 위해 지역에 기반한 민주적인 협의체의 구성
- 2) 특별 임시구조로 Continuing Comm.(계속위원회)를 형성
 각 지역 5인의 단체대표 / 각 지역별로 2명의 교대원들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유럽, 기타)
 기준은 인권문제 전 부문을 반영하는 각 지역단체와 노동자, 선주민, 여성 그리고 역사적으로 억압된 여타의 부분을 위한 단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 했으며,
- 3) 계속위원회라는 용어는 최대한 2년간 지속되며 가능하거나 요구되는 각 대륙 혹은 소지역별 준비소모임과 각 나라별 준비모임을 조직하며,
- 4) 현존하는 지역 조정위원회와 협력하여 현재의 문화적, 정치적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내의 개정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하며,
- 5) 폭넓게 단체들과 사람들을 접촉해야한다고 정리하였다.

3. NGO FORUM 안건 및 일정표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PROVISIONAL

NGO FORUM AGENDA

Vienna, Austria 10-12 June 1993

"All Human Rights for All"

THE JOINT NGO PLANNING COMMITTEE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THE JPC

The Joint NGO Planning Committee (JPC) was formally established in December of 1992 after consultations between the CONGO human rights committees and the Vienna based Ludwig Boltzmann Institute of Human Rights. It is composed of eight representatives of the CONGO(*)Planning Committee, five of the Ludwig Boltzmann Institute of Human Rights (BIM), and two representatives of each of the Regional Coordinating Committees formed in connection with the Regional Preparatory Committee meetings held in Tunis, San Jose and Bangkok.

The CONGO Planning Committee consists of representatives of the Special Committee of International NGOs on Human Rights (Geneva) and the NGO Committee on Human Rights (New York) who were elected by their respective committees with tasks to prepare the NGO Forum and to assist BIM in organizing the NGO parallel and fringe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NGO REPRESENTATIVES SERVING ON THE JPC

The persons designated by the three components of the JPC to serve on the committee are

CONGO Planning Committee:

- Techeste Aherom, (Alternate Member, Wytze Boss) Baha'i International Community
- Edith Ballantyn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 Marek Hagmajer, World Federation of United Nations Associations
- Eya Nchama, International Movement for Fraternal Union among Races and Peoples
- Sol Nahon, (Alternate Member, Roger Wareham, International Association against Torture), International Alliance of Women
- Harris O. Schoenberg, B'nai B'rith International and Coordinating Board of Jewish Organizations
- Mark Thompson,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Ludwig Boltzman Institute of Human Rights

- Felix Ermacora
- Sigrid Farber
- Manfred Nowak
- Ingeborg Schwarz
- Eva Wipler

Regional Coordinating Committees:

- Africa - Ouedraogo Halidou, Unions Inter africaine des Droits de L'homme.
- Frej Fenich, Institute Arab des Droits de L'homme

Asia/Pacific - Cecilia Jimenez, Philli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Mervat Rishmawi, Al-haq
Latin America/Caribbean - Liliانا Ortega Mendola, COFAVIC. Veronica Mendizabal,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North America - Laurie Wiseberg, Human Rights Internet. Audrey Chapman, American Associ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THE JPC'S MANDATE AND ACTIVITIES

The JPC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raising wide public awareness for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WCHR), and to create a framework for, and facilitate the holding of NGO activities parallel to the UN conference. The JPC is recognized by the WCHR's secretariat and by the persons responsible for the WCHR in the Austrian Foreign Ministry.

The NGO Forum

In consultation with the NGO representatives at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preparatory meetings, the JPC established the agenda, program and working methods of the NGO Forum, "All Human Rights for All". It solicited the Forum's President, Rapporteur and Keynote speakers, and the resource persons, chairs and rapporteurs of the Forum's working groups. It drafted the Forum's Rules of Procedure and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running of the Forum.

Parallel Activities of NGOs

The JPC has assisted BIM in coordinating the parallel activities undertaken by NGOs during the WCHR, including workshops, conferences, lectures, exhibitions, concerts, video showings, tribunals etc.

Information, Administration and Finance

In order to disseminate information about the WCHR and related NGO activities, an NGO Newsletter was printed in four languages and disseminated worldwide.

The BIM prepared a provisional budget which was later reviewed by the JPC covering all NGO activities including the NGO Forum and began raising part of the funds to make the NGO events possible. The activities of BIM included acquiring the premises in which to hold the NGO activities (meeting halls and exhibition space), interpretation facilities and interpreters, photocopying, fax and computer facilities, different types of conference equipment, insurance and advance deposits to ensure accommodation space for the participants etc.

Funds have been obtained from governmental and private sources, and contributions have been made in kind by all members of the JPC and others. A full financial report by BIM and the Geneva

members of the JPC will be made available once the books are closed and audited. BIM has been entrusted to receive as well as disburse all the funds secured taking into consideration acceptable accounting procedure. The only exception is the contributions of two institutions that have been disbursed by the Geneva members of the JPC on specific programs.

Upon receipts of grants to assist the participation of a limited number of NGOs from different regions in the Vienna events, the JPC facilitated the establishment of lists of persons to be funded. The lists were drawn up on a regional basis by representatives of the Regional Coordinating Committees in consultation with women's and indigenous peoples' groups, and within the criteria set by the donors and by the JPC.

BIM assumed the major organizational an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Other members of the JPC, particularly the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the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and the Baha'i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provided support.

The Role of the JPC during the Forum and the WCHR

The JPC will function throughout the WCHR. While BIM assures entir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the administrative and logistical support for the NGO parallel and fringe activities, the JPC as a whole will be responsible for the running of the NGO Forum, and will be concerned with questions of NGO access to the UN conference, and generally with matter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al conference and the NGO activities.

The JPC can be a vehicle for coordination and a channel for sharing information as a means to enhance the presence of NGOs at the WCHR.

NGO-FORUM AGENDA

Vienna Austria Center, 10 - 12 June 1993

Wednesday, 09 June 1993

- 16.00-18.00 Joint NGO Planning Committee Meeting
Final Planning with all chairpersons, resource persons and rapporteurs
Workshop Area 1
- 18.00-20.00 Coordination meetings of regional and thematic NGOs
Halls G, H, I, K and workshop areas

Thursday, 10 June 1993

- 09.30 - 11.30 Opening Plenary Session
Chair: Albertina Sisulu
General Rapporteur: Manfred Nowak
- Welcome Address, Member of the Joint Planning Committee
- Keynote Speeches:
Ibrahima Fall, Secretary-General of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 Vera Chirwa, Malawi
- Sheikh Hasina, Bangladesh
- Issam Abdulhadi, Palestine
- Rigoberta Menchu, Guatemala

- 11.30 - 13.00 - Procedural and Organizational Matters
Hall D

- 15.00 - 18.00 Working Group A
-Evaluation of progress mad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of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UN standards and mechanisms. Recommendations for their improvement, and greater involvement of NGOs.
Chair: Upandra Baxi
Rapporteur: Helena Cook
Resource Person: Philip Alston
Working Groups
Hall D

Working Group B
-Assessment of the present state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Chair: Paul Reeves
Resource Person: Dalee Sambo
Rapporteur: Alejandro Rojas
Hall K

Working Group C
-Eval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the protection of women's rights
Chair: Asma Jahangir
Rapporteur: Florence Butegwa
Resource person: Charlotte Bunch
Hall G

Working Group D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development and democracy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ole of NGOs in fostering popular participation and in creating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solidarity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Chair: Shanti Dairiam
Resource Person: Clarence Dias
Rapporteur: Antonio Cancado Trindade
Hall H

Working Group E
-Examination of current trends in human rights violation as a result of racism, xenophobia, ethnic violence and religious intolerance with a particular focus on minorities. What should be the appropriate response of the UN?
Chair: Janek Kuczkiewicz
Resource Person: Theo van Boven
Rapporteur: Rhadika Coomaraswamy
Hall I

Friday, 11 June 1993

- 09.30 - 13.00 Working Groups continued
15.00 - 18.00 Halls D, G, H, I, K

- 19.30-21.30 Bruno Kreisky Forum for International Dialogue
-Welcome Address by Ferdinand Lacina (Austria Federal Minister of Finance)
-Presentation of the recipients of the Bruno Kreisky Prize for Human Rights 1993
-Lecture given by Boutros Boutros-Ghali,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Foundations of World Progress: A Fresh Look
Hall A

Saturday, 12 June 1993

- 09.30 - 13.00 Plenary Session
Chair: Albertina Sisulu
General Rapporteur: Manfred Nowak
-Report of Working Groups, adoption of recommendations
Hall D

15.00 - 18.00 Plenary Session
Chair: Albertina Sisulu
General Rapporteur: Manfred Nowak
Resource Person: Adama Dieng
-General Discussion on improved access of NGOs
and indigenous peoples to the UN mechanism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resentation of final report and recommendation
to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Concluding Speech: Jimmy Carter
Hall D

NB: Film
Opening of Film Festival "Menschenrechte in Film"
Filmcasino

Rules of procedure for the NGO Forum
ALL HUMAN RIGHTS FOR ALL

Vienna, 10-12 June 1993

1. AIMS

The Forum is intended to facilitate a dialogue among NGOs, and in particular:

- (a) To review and assess the progress mad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identify the obstacles and ways in which they can be overcome, to evaluat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UN standards and mechanism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formulate recommendations for their improved implementation and amelioration, as well as for greater involvement of NGOs;
- (b) To assess the present state of the protection of indigenous peoples; to identify the obstacles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ir rights and ways in which they can be overcome;
- (c) To assess the present state of the protection of women's rights, to identify obstacles to the full enjoyment of their rights and ways in which these can be overcome;
- (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development and democracy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ole of NGOs in fostering popular participation and in creating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solidarity between North and South; to examine contemporary trends and policies hamp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 (e) To examine contemporary trends in human rights violations as a result of racism, xenophobia, ethnic violence and religious intoleranc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minorities; to propose the appropriate response of the United Nations;
- (f) To examine NGO access to and NGOs' role withi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rogrammes.

Like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the NGO Forum does NOT address Human Rights situations of specific countries. The participants should address the agenda of the NGO Forum and should avoid citing specific countries as examples.

2. PARTICIPATION

- (a) All interested NGOs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indigenous peoples, human rights institutions or centres, who registered at the Forum shall have the status of participants.
- (b) Members of governmental delegations to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ials and the media shall be entitled to attend the Forum as observers.
- (c) Individuals invited by the Joint Planning Committee for NGO Activities in Vienna (hereafter called the Joint Planning Committee) shall attend the Forum as guests.

3. RIGHTS OF ATTENDANCE

- (a) Participants, observers and guests shall have the right to attend all sessions of the deliberative bodies of the Forum, namely the sessions of the plenary and of the working groups. In case of shortage of space, the Joint Planning Committee has the right to limit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observers.
- (b) Participants shall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on equal terms in the discussions and in the elaboration of NGO position papers, statements or other documents.
- (c) Observers and guests shall be allowed, if time permits and with the consent of the presiding officer, to address the plenary sessions or the working groups. They shall not have any negotiating role.

4. ORGANIZATION OF WORK

- (a) The work of the Forum shall be conducted in opening and closing plenary sessions and in five working groups.
- (b) The Joint Planning Committee in Vienna shall nominate the President of the Forum, as well as the chairpersons, rapporteurs and resource persons for the working groups.
- (c) The officers presiding over the bodies of the Forum shall declare the opening and closing of each session; accord the right to speak; direct discussions; and ensure the observance of the Rules of Procedure. They shall rule out of order speakers raising issues not included in the Agenda of the NGO Forum.

- (d) The Joint Planning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smooth running of the Forum; shall coordinate the work of the Secretariat of the NGO Forum; and shall assist the officers of the Forum.
- (e) The working groups shall deal with the issues outlined under paragraph 1 (a - f). They shall conduct their business in the spirit of a free dialogue with a view to proposing new fields and modes of action for NGOs.
- (f) The report of each working group shall include majority and minority views, highlighting those points on which there was general consensus (unanimous or with majority support), but also indicating any reservations or dissenting opinions.
- (g) The reports may include recommendations but not resolutions.
- (h) The reports shall be distributed to the participants at the final plenary session.

5. DECISION-MAKING PROCESS

- (a) The participants in the Forum shall be encouraged to elaborate and adopt position papers, statements, or other documents for submission to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or for the purposes of NGO follow-up activities.
- (b) Such expressions of views shall be formulated outside the framework of the bodies of the Forum and shall bear signatures of interested participants. Although formulated as a result of the Forum process, they shall not be considered as official Forum documents.
- (c) The statements addressed to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shall be submitted by their signatories on their own behalf in accordance with relevant United Nations procedures.
- (d) The General Rapporteu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reparation of a general statement on the basis of recommendations from the working groups. The Joint Planning Committee, in case of need, shall appoint a drafting committee. The draft statement shall be approved by the Joint Planning Committee and shall be submitted to the final plenary session for adoption. The statement shall be the only official document of the NGO Forum.
- (e) The presiding officers shall undertake to obtain consensus.

6. DOCUMENTATION AND OTHER MATERIALS

The participants shall be encouraged to publicize their work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Documentation and other materials shall be exposed by the participants on the stalls outside the meeting rooms. They shall indicate the name of the sponsoring organization or individual author.

7. PUBLIC AND MEDIA RELATIONS

(a) Representatives of the press and other media shall be admitted to the plenary sessions and to the meetings of the working groups, unless participants choose otherwise.

(b) The Joint Planning Committee or its designated representatives shall be the only official spokespersons for the NGO Forum.

8. OFFICIAL LANGUAGES

(a)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Forum shall be English, Spanish, French and German.

9. FINAL REPORT

The Final Report of the Forum shall consist of an introduction, an opening statement and other documents considered appropriate for inclusion by the Joint Planning Committee; the official statement; the reports of the rapporteurs of the working groups; and the list of officers and participants.

C. 세계인권대회 공대위의 활동

1. 비인 대표단 활동의 총괄 및 일지

가. 대표단 역할 분담

<역할 및 활동구조>

한국 인권단체들의 대표단은, 대표단장에 홍성우(민변), 집행위원장에 천정배(민변), 총무에 노태훈(인권운동 사랑방)의 책임하에 비인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때 대표단에 참석한 사람들은 국내 인권단체에서 16명, 국외에서 협력차 참석하신 외국분 2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외에도 국외에서 「해외한국청년운동연합」과 재독장기수후원회등 교포들 14명이 공대위에 결합하였다. (참가자 명단 참조)

또, 활동별로는 회의담당팀, 진열/전시담당팀, 공연/행진담당팀, 섭외연대담당팀, 연락/회계, 총무/일지기록, 사진기록으로 담당자들을 나누어 회의와 행사에 임했다.

<일정별 참석자>

일정별로 참석할 사람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사전에 정하고 진행하였다.

6월 9일 : ASIA-PACIFIC NGO FORUM - 4-5명

10 - 12 : NGO FORUM - 전원 참석

14 - 25 : 본회의 참석 - 6-7명

IS주최 인권활동가 훈련프로그램 <매일 아침> 4-5명

진열대 담당 - 2인/교대

<홍보책자, 자료, 그림 등 진열, 일부판매, 안내홍보>

사진 전시회 담당 - 2인

사진 전시회중 주제발표 - 2인

풍물/노래/시설 - 4인

문화행진 - 본회의 인원일부 제외 전원참석

<공대위 입장 정리>

회의 의제에 대한 공대위의 공동입장 정리를 위해서 다음 주제에 대한 브리핑회의를 갖기로 하고 추진하였다.

- (1) 유엔에 대한 입장 : 잠재적 가능성과 기존활동에 대한 비판
- (2) 인권보호제도 및 발전모델에 대한 입장 : 새 국제질서에 대한 견해
- (3) 아시아지역 공동인권활동에 대한 입장
- (4) 세계 주요인권침해 지역 상황

나. 국가보안법 심포지움과 문화행사 계획

(1) 국가보안법 심포지움

방콕회의에서 제기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관심을 비인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연관된 인권침해와 인권보호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움 행사로 담아 중요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서 국가보안법과 연관된 인권침해를 종합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진보적 인권단체들과 연대성과 향후 협력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본 공대위의 위상을 높여 향후 국제기구관계의 활동을 추진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진행사항은 국보법 심포지움 경과보고 참조) 행사준비는 조용한 변호사가 담당하였고 공대위의 요청에 따라 행사비용을 세계교회협의회(WCC)에서 지원하였다.

(2) 문화행사

비인 인권대회는 회의와 병행해서 여러가지 문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대위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문화매체를 통해 전달하고자 몇가지 활동을 준비하였다.해상항의 한국내/국제적 정치경제적 구조를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 주요 주제
 - 국가보안법, 기타 악법의 희생자들 : 대량구속, 장기수, 탄압실태
 - 미국, 분단, 독재, 불평등이념, 인권유린의 상호관계
 - 미군기지-팀스피리트훈련-군사비-경제발전정책-불평등-인권침해
 - 민주통일운동 열사들, 민주통일운동의 과정
 - 한국형 발전모델의 반인권적 성격 요약 + 건전한 발전모델의 원칙
- 방법 : 각주제에 따른 ○홍보책자 ○노래공연 ○ 전시진열 ○ 문화행진

다. 숙박 및 기타

약 2000여개 단체 만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에 숙박문제는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해서 확인한 결과, 민간단체들의 숙박과 기타 편의를 담당하기로 한 오스트리아의 볼츠만인권연구소(BIM)가 별로 준비해 놓은 것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많은 단체들이 어이없어 하고 분노했으나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여러 숙박시설에 분선해 기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공대위는 자체 통합성을 위해서는 분산 기거하는 것보다 관광객용 야영장에서 천막생활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였다.

라. 활동일지

<영어약명>

- 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단체/민간단체
- JPC : Joint Planning Committee 민간단체를 위한 공동총무기구
- BIM : Boltzman Institute of Human Rights 오스트리아 볼츠만인권연구소
- CC : Coordinating Committee 민간단체간 조정위원회(NGO대표로 구성됨)
- Ibrahima Fall : 본 인권대회 사무총장
- Plenary : 전체회의
- Main Committee : 정부간회의의 주제 토론회의

6.10(목) 민간단체 회의(NGO Forum) 시작.

- 일정대로 행사 진행을 시작했으나, 처음부터 JPC 및 BIM에 대한 문제제기로 주제가 집중됨. 그와 동시에 원래 계획대로 지역별, 분야별 NGO회의가 진행됨
- JPC와 BIM에 대한 문제와 회의진행 전망에 대해서 아태지역 조정위(CC)와 중남미 및 아프리카 인권단체 대표(일부)들과 공동회의를 가짐. 여기서 다음날 아태지역 NGO들이 중심이 되어서 남측 NGO총회를 개최기로 함.

6.11(금)

- 8:40 : 아침 공대위 회의/브리핑 - 전원 참석 (정대협, 태평양유가족회 불참)
각자 참석할 분과 재확인, 일과 업무 확인
- 일부정부대표, 지역별 주제별 보고자, 일부 NGO 간사 들 비공식 모임을 가짐.
○ JPC는 유엔의 유일한 통로.
○ JPC, 팔Fall과 회의 - 팔 "NGO측 제안은 다 OK"
- JPC에서 아태대표들의 자격문제를 시비함
- 티벳,중국관계 행사 모두 취소된 것으로 확인됨 - JPC
- 아태대표들 JPC에서의 탈퇴문제 : 대표들이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즉석에서 결정하되, 우리가 앞장서서 탈퇴하지는 않는다.
- 10시~6시 : 5개 작업분과 속개, 각 작업분과 진행절차나 빚에 관한 논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제에 대한 토론을 계속함. 발언 신청자 많은 관계로 충분한 의견개진이 힘든 상태에서 계속 많은 의견이 제출됨.
- 12:30 : 3세계NGO총회 개최
 - 티벳의 달라이 라마 초청 취소에 대해 항의성명 및 공동대응키로 함
 - 토요일 오전 NGO참여에 대한 압박을 항의하는 시위를 개최기로 함
 - 지역별 3인으로 9인 Coordinators' Group을 구성기로 함.
- 전시팀 홀K앞 벽에 (허가없이) 한국인권상황 전시 시작.
- 6:30 아태CC회의 : 시위준비 점검 - 자연스러운 집회로 진행하자.
○ 예산 : 각자 지출/필요예산 천정배에게 보고
외부 지원 가능성 타진 - 일차는 등록비 반환

- 오스트리아센타에 도착하니 경찰전과 경찰 13명이 정문에서 지키고 있었음.

9:00 : 공대위 아침회의 - 아침시위에 대해서만 간단히 공지함

- 정신대 피해자 북한측 참가자 어제 도착함.

9:15-45 : 남측NOG 시위 약 200여명 참가, 기자들 상당수, 경찰 제약 거의 없음.

"Non-Silence NGOs" "We Want Dalai Rama Back!", Without NGOs No

Human Rights

10:00 : NGO전체회의

- JPC의 무능함. 정부간회의 참여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문제 제일중요.

- 원래 진행대로 할 것인지 별도 안전을 먼저 처리할 것인지 논란.

- 달라이 라마 초청안 동의안, 통과.

- 지미 카터 초청 거부하자.

- 별도 안전은 모두 오후에 진행하고, 작업분과 보고 진행함시다.

- 1-5 작업분과 보고서 발표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으로 진행됨)

- 여성분과 발표시에 결론에 대해 열화와 같은 지지가 나옴.

- 발전분과 발표시 : 안보리 비토권/민주화 열화적 지지 받음. 금융기관문

제도, 국제금융기관도 인권기준을 따르도록. 국제무역관계의 결정독점.

가트체제내의 불균등성 심화, 준비 증대.

12:30 남측NGO 기자회견 및 전체모임 조정회의

1:30 남측NGO 전체모임 (중남미지역은 자체회의로 불참)

- 아프리카측도 남측NGO 구조짜는데 합의

- 본회의에는 총 550석이 확보되었다고 함.

50석은 Main Committee 용

- 대표선발에 빠진 곳 : 선주민 그룹, 국제NGO그룹,

- 많은 수의 중국NGO대표가 사실상 정부인사인 것이 밝혀짐. 빙에게 문제제기 하자.

- 지미 카터 초청 반대 : 얼마든지 올 수 있으나, Plenary 마감연설은 곤란

3:00 Plenary ; BIM이 오늘 저녁으로 해산하기로 한 점을 밝힘. 단 NGO들이 원한다면 행정 및 재정업무는 계속할 것임. 빙의 제안과 NGO들의 제안이 검토되는데 주로 지역별 주제별 대표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논란. 결국 지역별 1인씩 나와서 조정하기로 하고 종합보고서 채택에 들어감. 종합보고자가 보고서를 요약해서 읽었으나 우선 초안을 복사해서 나눠주지 않았고, 둘째 요약한 내용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사회자가 이견이나 보충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폐막연설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러자마자, 야유와 함성이 시작되면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다. 주로 3세계의 대표들로부터 가장 거친 야유를 받은 카터는 회의장경비 약 10명의 경비를 받으며 입장했다. 야유와 함성이 약 30여분동안 계속된 후 그 와중에도 카터는 준비된 원고를 끝까지 읽고 퇴장. 그후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연설이 몇명 있었고 이후 무슨 인권상 수여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7:00 NGO Coordinators' 회의

6.14(일)

10:30 전체모임(숙소)

- 일과 점검, 발언내용 준비 점검, 언론...

- 5시, 7시 인권증진 시위(Stephans Platz) 공지 - 풍물, 깃발, 현수막 준비

2:30 병행 행사 참석

- 국제금융기관을 둘러싼 정치의 영향 공청회 - Inhured

인휴레드 등 5-6개단체 주최, 내용 - 황차은 메모 참조

- 아태민간단체네트워크 - 대만인권협 주최

별 내용이 없었다.

- CHANGE에서 주최한 여성 로비훈련, 담당자 만나와, 사람들 실망.

- 독일통합에 관한 연설 : 참석자 전무, 취소

- 세계 각단체 포스터 베스트 콜렉션

- 오후 5시 시위 : 풍물로 큰 관심, 언론에 조명 좋음, 남규선 장기수에 대해 발표 이영숙 국보법에 대해 독어로 연설. 7시 시위는 무산.

오후 7시-9시 : 아태CC회의

1) 6.12 오후총회 사건(지미 카터)에 대한 입장

- AI, ICJ 등은 대언론 성명발표 (양비론)

- 내부 입장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o) 우리가 성명을 따로 발표할 필요는 없다.

(ㄱ) 각 단체가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 행동한 것이다.

(ㄴ) 카터는 폐막연설자로는 초청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2) NGO좌석 할당 문제

총 550석이 할당됨. 아태지역에 72석, Main Committee에 55석.

본부(로비,언론,발언,예비 12명) 소지역별 12명으로 하자.

참석자는 참석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사람으로.

3) 의견반영

- Plenary에서의 발언은 거의 자유롭게, 최대 100번(5분씩)

- 문안기초위 : NGO대표들의 1회 발언으로 끝, 그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

- Main Committee : 일반 관례대로.

4) Contact Group의 조직 및 운영

- 아시아대표 3인 및 2진 3인해서 6인으로구성 (천정배 포함,

이대훈은 천정배 통역자격으로 참석)

- 회의 및 브리핑 : 매일 6시 (단 6.15는 오후 5시)

- 아태및 지역회의를 내일 9시-10시 개최

5) 예산문제 : 인휴레드 고팔과 무난하게 해결됨.

천정배 회계로서 지출서명권 가짐

- 베를린에서 김성경, 서울에서 서준식 합류.
- 10:00 - 12:00 천주교인권위 캠프장에 합류 대화, 홍성우, 김찬국도 참시 합류.
- 전체모임 : 각 활동보고, 브리핑, 11시 50분

6.14(월)

- 8:30 야영장의 참가자 브리핑
- 9:00 아태 각 소지역모임 : 비표 배포 - 한국 3
- 중국문제로 갈등, 서로 독립적 NGO 아니라고 얘기하며 먹살까지 잡음. 중국관변 NGO쪽 사람 힘으로 천정배로부터 비표 한장을 강탈함.
- 2시반 : 한국기자들 아태 NGO사무실 방문
- 본회의 시작

6.15(화)

- 8시 : NGO 총회 -
- <본회의>
- 오전 12시경 한승주 한국외무장관 발언
- 오후 6시반 북한대표 발언
- 오후 3시 : 한시간 동안 각 워싱턴 보고자 발언
- 쿠바봉쇄 미국정책 공청회 : 반쿠바 인권단체와 반미(중남미)인권단체들간에 충돌이 일어남.

<초청 식사>

- 온 사람 : 시바, 엔지, 사라, 세실리아, 라비, 모세스, 메릴린, 분탄, 고팔 1-2,
- 식사조와 추가인원이 훌륭한 식사를 준비, 소개, 대화, 노래 등 재미있게 진행됨. 11시 파장, 중간에 멕시코인등 다른 텐트에 머물던 사람들도 합류 분위기가 더 좋아짐.

6.16(수)

- 8시반 아침모임 취소 / 늦게 일어나서 참가 저조
- 9시 동북아소지역 모임 : 동북아는 추가로 대표를 내지 않기로. 원하는 지역은 낼수 있다는 입장
- 전체회의 Plenary : 특별한 사항 없음.
- 1시 : NGO 전체회의
 - o 구두발언, 서면발언 절차 : 아시아지역은 6명
 - o Drafting Comm. 각 보고자 발표듣고 난후 12시 40분경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 단체에서 반발
 - o 참고 : 구두발언은 Plenary의 경우 UN Secretariat에 접수하고 그 명

단과 순서가 정해지면 아침에 진행표를 보고 발표자 순서를 알게 된다. 오전 혹은 오후일 경우에 계속 회의장에서 발언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서면 발언은 역시 UN Secretariat의 문서담당에게 내용검토를 받아 합당하다 판정되면 배포되는데 NGO의 경우에는 자비로 370부 복사해서 갖다 문서실에 쥐야 배포가 됨.

Plenary는 총회로서 각국 대표자회의라고 볼 수 있으며, Main Committee는 실무대표자회의의 성격을 갖는데 실제 회의의 안건을 처리하는 뒷배경회의의 역할을 한다. Drafting Comm.는 Plenary의 의견과 Main Comm.의 주문을 문안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 2시 : 아태NGO회의
 - o 필리핀/아세안 소지역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약간의 수정과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새 체제가 출범. CC는 각국 대표를 수렴하는 확대된 구조로 변하고 개인으로 주요역할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시 Mandate를 받거나 새 인원이 추가되거나 하게 된다. 저녁 6시 첫 CC모임.
- 3시 : Main Comm.은 발언자가 없어서 회의 중단.
 - 이 때 발언신청하면 당장 발언하게 되므로 발언신청 하지 않았음.
 - Plenary 발언 신청 : 유엔사무실에 가서 두개 접수시킴.
 - / 조용환 - 아태지역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 곽은경 - 아태지역 식민지배 및 외세강점
 - 공동발언신청 : 조용환 위와 같은 주제로 서면발표문도 얼마든지 접수할 수 있다. 규칙에 맞게 작성되었으면.
- 3시 : 개발과 민주주의 Panel Discussion - 불참
- 5시 : 민중외교훈련 설명회
- 6시 : 남아프리카에서의 폭력과 청년인권 - ANC주최
- 7시 : Amnesty 텐트에서 풍물치며 국보법 행사 홍보하기로 했으나 모인사람이 없어 취소함.
- 8시 : 비엔나 윤목사부부가 육계장을 준비해와서 저녁식사를 아주 잘함.
- 10시 : 공대위 회의
 - o 국보법행사 및 시위 준비, 필리핀팀과 중심이 되어서 진행키로
 - 오전에 아태 주요단체로부터 결의문 서명을 받도록. 기자회견은 내일 2시반, 정대협과 행사접치는 문제,

6.17(목)

- 오전부터 국보법행사 홍보에 역점을 둠
- 결의문 초안 추가보완, 인쇄, 복사, 단체서명 받음
- 점심은 윤목사가 준비해준 김밥으로

- 3시-5시반 : 국가안보와 민중안보 심포지움 Hall D
 - 최고 약 150명 참가, 결의문 채택, 결의문 공동서명, 동시통역
 - 결의문채택(곽노현 낭독), 엠네스티 입장도 설명, 단체서명 때문에 한청과 약간의 문제가 생김.
- 5시반-6시 : 아태지역 공동시위
 - 센타 현관 앞, 진행 한청련, 풍물치고 구호 및 성명서낭독(천정배)
 - Human Rights for All in Asia-Pacific, Political Prisoners, Free Them All, Madres도 참여, 분위기 열광적, 참석자 기자포함 약 70여명.
 - 경호경찰 긴장, 경호전도 데려옴.
- 7시 : 홍성우 김찬국 귀국전 잔치 - 캐서린 윤목사 포함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 술, 고기를 즐김.

6.18(금)

- 김찬국, 홍성우 출국
- 10시 : 유럽의회 맥고웬 의원과 아태단체 로비모임
 - 국가중심주의, 경제발전, 인권침해, 국보법에 대한 상황설명
 - 고등판무관, 조약비준, 모니터제도 및 보고서 제출을 의견으로 주문
- 민가협, 유가협 Madres와 만남.
- 11시반 아태CC회의
 - 특별한 논의와 열기를 찾지 못한채 구성에 급급한 채로 회의가 진행됨
 - 비엔나 이후를 생각해 참가하는 것이 의의가 있음.
- 1시반 : ICJ 워싱턴 참석 : 국제인권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의견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 4시반 : Drafting Committee에 민간단체가 봉쇄된 것을 항의해서 민간단체들 15분동안 항의 철수행동, 센타 현관앞에서 시위, 경찰 진로를 봉쇄하려 했으나 밀림.
- 5시 : UPI기자와 면담.
 - 필리핀인권상황 행사에 다수 참가
 - 구두발언/식민지 및 인권 준비
- 10시 공대위 회의
 - 한국의 날 행사 준비
 - 전체문화행사 참여계획
 - 구두 발언 내용 검토

6.19(토)

- 오전 : 국보법 결의문 수정보완, 복사
 - 전국연합-바얀 만남, 민가협·유가협-필 단체 만남
 - 에드베이커 출국
- 2시 : 단체연합 행진 취소 (거리가 멀고, 참가단체 적음)

각자 행사장소인 Donauinsul로 향함
 행사장소에 헤진 스님이 먼저 도착해서 홍보대를 맡아놓고 있다가
 사람들이 도착하면서 홍보대 가동, 만장과 걸개 그림 설치

- 4시경 : 김덕수 사물패 공연시 만장들고 홍보
- 엠네스티주최 행사에 이영숙씨가 우리나라 양심수상황을 5분간 발표하고
- 정승진 사물패 공연 - 큰 호응을 얻음. 풍물놀이 야외에서 약 1시간 진행
- 공대위 해외동포 및 주변사람들이 흥겹게 한판 놀음
- 9시 해산

6.20(일)

- 자유시간 (각자 정리 관광 등 개별 행동)
- 5시 : 일본 워치 Japan Watch 참가, 주최측 약 15명, 참가자 약 20명 참가, 주제는 일본내부 개별 인권침해 상황에 초점, 참가자 관심은 일본과 아시아각국의 인권 및 평화 반핵에 대한 관심이어서 잘 맞지 않았다.
- 저녁식사 : 오지리식당에서 외식, 음식과 음악을 즐겼으나 가격이 너무 비쌌음.

6.21(월)

- 1시 전체 민간단체 회의
 - 민간단체 발표는 주제별로, 발언자는 우리가 알아서 보내는 것
 - DC 진행과정 주말 이틀 내내 만나 토론했다고, 긍정적 전망 보여, 원칙과 강령에 대한 토론하는 그룹 2로 나뉘어 진행
 - 발전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 20개 문단이 합의 - 개발권리도 포함.
- 2시 Drafting Committee 진행경과 보고
- 민간단체 최종문서 초안 Conf./157-7 add. 1 (실수 삭제내용 보충)
- 6시 : 아태지역 총회
 - 로비, 문서, 언론그룹 등 각활동 보고 보충토론
 - 비엔나 후속조직에 대한 제안 골자
 - 오늘 오전 중국정부 민간단체들에게 중국이 'hard-liner'가 아니라고 밝힘, 그 해석을 두고 중국이 유연해질 가능성을 점치기도.
 - Drafting Comm.: 인권장애물에 대한 언급은 안하기로, 원칙부분에 관한 합의가 가능할 듯, 단 행동강령에 대한 논쟁을 치열함. 보스니아문제에 대한 이슬람국들의 압력이 결의문채택에 중대한 장애가 될 듯. 아시아각국 정부간의 협조가 눈에 떨 정도로 두드러짐.
 - 막판 로비활동의 중요성 때문에, 로비팀과 언론팀이 함께 활동하기로.
- 빈이후 대책모임(PV) - 이후 대책 및 조직체계에 대한 제안문 작성중
- 내일 제출할 것, 화-수 기간 각 지역별로 심의바람. 기본내용은 지역별 협의체에 개초한 세계적 연락망, 상부구조가 결정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 (Core concept : Regional Coordination + Global Linking)

- 효과적인 로비활동은 막판이 제일 중요
 - 1) 소국의 표를 동원하기 쉽고
 - 2) 막판 로비가 효과적이기 때문
- 그래서 로비활동팀 증대 필요, 매일 오전 9시 회의
- 현재 우리 아태지역 NGO의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 만나는 정부대표, 타지역 단체들마다 아태지역이 가장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가. 실제로 Draft에 포함된 문구와 삭제된 문구는 아태 지역의 공동선언문과 로비목표와 일치하는 것이 많다.
- 중국 큐시양 : 아태지역 새 선언문 필요, 새로운 인권국제회의를 개최하자.
 - 나중에 논의하기로, 사실상 동의 없음.

6.22(화)

- 9시 : IS 브리핑 : (내용은 신문과 비슷 Terra Viva 참조)
 - 단 IS의 경우, 이슬람국의 공동 움직임을 사보타지로 보고 있다.
 - 일부 아시아국은 필리버스터로 Drafting을 방해하고 있다.
 - 논쟁 : 국가주권, 난민, 이주민 등 문제
 - 논쟁의 핵심은 행동강령(1-2부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봄)
 - 그중에서도, 1) High Commission 2) Penal Court 3) Financial Resources
 - 1)의 경우 당장 설치하자는 안의 절대 합의 불가능, 아마 유엔총회로 설치가능성 심의를 넘기자는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
- 1시 : 전체 NGO총회
- 오지리 외무상, NGO 행사장 순회방문
- 6시 : 아태지역 문화행사 "Sound of Freedom"
 - 전체진행 - 이진숙,
 - 아태지역 6개국 참가 발표
 - 한국 : 노래 - 정승진 독창 3곡, 전체합창 2곡, 황차은 성명 낭독, 구호
 - * 기관원으로 추정되는 2인 발견 퇴장시킴.

6.23(수)

- 2시 : 전체 NGO 회의
 - NGO Access에 대한 결의문 내용 심의
 - 1) Ecosoc자격의 확대
 - 2) Treaty Body에 직접 Communication 확대
 - 3) 유엔사무국 : 각국별 인권상황, 정보 종합정리할 의무
 - 4) 개별 제소의 확대
 - 5) 정보공급의 체계화, 신속화, 방식 다양화
 - 인권활동가의 보호는 별도 결의문으로 제출키로.
 - 비엔나 이후 대책, 주제분과의 제안문 발표 내일까지 지역별로 심의키로.

- 4시 - 8시 : 전체평가 (주제별 평가는 못하고, 개인별 평가로 진행)
 - * 기록생략 : 추후 공식평가서로 대체
 - * 각 개인의 평가와 참가했던 각 단체의 평가를 합하여 종합평가서를 공동 작성하자는 의견 : 공대위, 양심수 찬성, 한청 추후검토.
- 양심수후원회 및 기타 - 간단한 송별회

6.24(목)

- 오전 : 아태지역 NGO공동발언의 하나로 한국측 전순옥씨 총회장에서 발언
 - 5분, 국가보안법 및 군사화.
- 10시 : 아태지역 마지막 총회
 - 1) NGO전체 특별결의안 문안 확정 :
 - 1) UN에 대한 NGO Access에 관한 결의
 - 2) 인권활동가 보호에 대한 특별 결의
 - NLC 소위가 준비한 안대로 확정
 - 2) 향후 대책 및 체계 : 지역별 협의가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
 - 필리핀 : 나라별 협의체가 없으면 혼선이 있다. 최우선은 나라별 협의체, 그에 기초한 지역별 협의체. 기타는 사DKS별로 연대해야 할 것. 그러나 NGO 다수의 의견이 Global Link를 갖기로 희망한다면 여기에 지지하자.
 - 고팔의 문제제기 - 그런 것을 결정할 아무 권한이 이 모임에 없다.
 - 그렇다면 소지역별로 합의하면 된다. 그렇게 하자.
 - 3) NGO 공동성명서 : 3인 대표 위임.
 - 이번 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
 - 4) 부젠빌 봉쇄에 관한 공동항의 서한 보내기
- 12:50 파키스탄 발언신청, 보스니아 특별결의문 제안, 심각한 막후조정 진행됨.
- 1시 : NLC 마지막 총회
 - 위 아태지역 안건을 종합, 통과
 - 아프리카 지역은 어느 때처럼 의견일치를 못봐
 - * 발표문안 2개 준비 (KONUCH, 민변)
- 3시 : 본회의 속개 4시반에 시작
 - IOC가 제기한 보스니아사태에 관한 특별결의문에 대해, 약 20여개국 의견을 들은 뒤, 투표. 찬성 88, 반대 1, 기권 55로 통과, 박수, 보스니아대표 눈물.
 - 이 안건으로 인해, NGO발언은 중간에서 중단. 내일 10시에 속개하기로.
 - 아태지역 CC 새벽 2시반 까지 고팔의 문제제기에 대한 회의진행.
 - 타결 못보고 내일로 연기, 고팔의 타 위원들 밤새 공동문서 작성.

6월 25일(금)

- 오전 10시 : 본회의 속개

-NGO들 발언 시작. 공대위 대표로 천주교인권위의 이대훈이 개발과 인권에 관한 구두발언, 이어서 민변의 천정배가 외세강점과 식민주의하의 인권에 대한 구두발언을 함. 두 발언 공식회의자료로 기록 및 배포됨.

- 본회의 최종문서 제출됨.

- 오전 10시 : 아태지역 CC모임, 고팔의 문제제기로 인해 어제부터 계속 열띤 논쟁. 고팔이 문서제출, 기타위원들도 공동입장문서 제출, 타협은 힘들듯.
- 11시경, 민주법연 조국 구속, 강기훈사건 홍성은 증언 번복인터뷰 소식 들음.
- 2시 : 공대위(일부)측 위 사건에 대한 대책회의
 - 항의 서한 작성하여 정부대표들과 언론에게 배포하기로 함.
- 3시 : 본회의 최종회의 속개
- 밤 11시 45분 : 폐회

2.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가 KONUCH 대표단

이름	주소	전화번호
홍성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3 서초빌딩 304호	594-6868
김찬국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344-29	334-5264
Catherine Scott	4 AshCourt, 115 BurntAshHill, Lee London SE12 OAH	851-0518
장소영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1동 604번지	365-0994
천정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의 16 성보빌딩 5층	T. 588-9274-6 F. 522-8117
혜진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9-1 불교인권위	T. F. 725-0452
황차은	광주시동구충장로1가27조대동창회관4층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T. 232-5809
전순옥	23D South Villas London NW1.9 BT	T. 71-485-7770 012-611-2031
각은경		
양영미 김성경	BERLINER STR 155 10715 BERLIN GERMANY	49-30-8541779
조용환	강남구 역삼동 816-3 창림빌딩 206호	T. 567-2316 F. 568-3439
전대진	서울 동대문구 이문 2동 264-262번지	968-2218
이대훈	서울 성동구 화양동 8-43 (1F)	462-5133
서준식	서울 은평구 응암4동 694-1 우성아파트 103-907	308-1368
Edward J. Baker	Haarvard-Yenching Institute 2 Diviuity Ave Cambridge MA. 02138 U.S.A	O. 617-496-6050 F. 495-7798 H. 617-734-8547
윤병섭	Schutzeng 13/10, 1030 Wien 비엔나 한인교회	7141883

남규선	서울 종로구 창신 2동 597-7 민가협	763-2606 765-5285
박래군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651-30 3/1	T. 764-1684, F. 743-2835
Park Hee Won Lee Keum Yoon	Korea Coordination of Europe Im Pratort 29 4690 Herne 1 Germany	T. F. 2323-12153
Kim Sung Tae	Korean Youth Movement in Australia P.O. Box 140 Canterbury, N.S.W. 2193 Australia	T. 02-787-1512 F. 02-718-8676
Kim Hee Suok Jung Gui Sang Lee Jin Sook Jung Seung Jin	Young Koreans United of U.S.A P.O. Box 12177 Washington D.C. 20005-06777	T. 202-387-2420(워싱턴) F. 202-387-2984() T. 213-732-5848(L.A) F. 213-733-1415(L.A)
장동인 김미진	Rotwand str. 8058 Erding Germang	T. 49-8122-86603
KIM JIN	Am Steinbusch 13, 8765 Erlenback 2 Mechenhard Germany	T. 09742-74173
Young-Sook Lee-Wallersheim	Genter Str. 23, 5000 Koln 1, Germany	T.F. 0221-517400
차광호	경남 장승포시 장승포동 468 장승동천주교회	T. 0558-681-7100, 2298
오용호	인천시 서구 가정2동 546 한신빌라 21동 207호	T. 032-579-6969, 7822
오창래	도봉구미아2동762-226일심빌딩6층 인권위원회	T. 795-3315 F. 795-3316
노태훈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도시개발 APT 904-1003호	T. 668-0468(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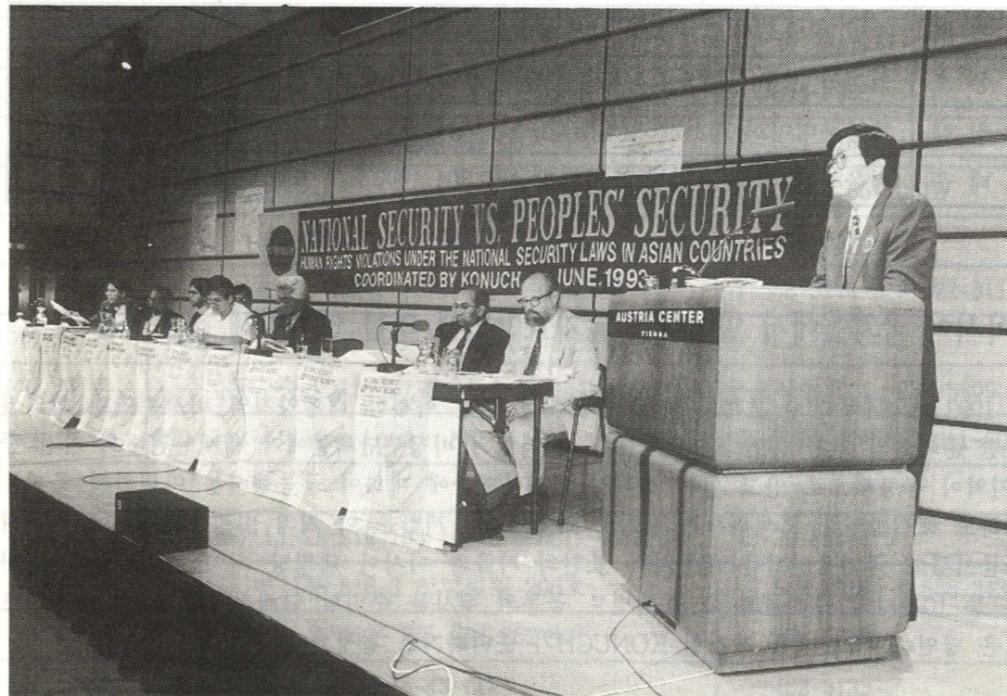
3. 아시아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심포지움 보고

1. 1993. 3. 24.부터 4. 2.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지역 비정부단체 회의와 정부간 준비회의 기간 동안 KONUCH는 이 지역의 비정부단체들에게 세계인권대회 기간 중 이 지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심각한 인권문제들에 대하여 공동행사를 마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은 이 지역 비정부단체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졌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권기구의 설치 문제 등 10여개의 주제들과 그 주제별로 공동의 행사를 준비할 단체가 결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이 문제를 제기한 KONUCH가 준비하기로 결정되었다.

2. KONUCH는 방콕의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각국의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설문(questionnaire)을 배포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설문은 "국가보안법"이란 "법의 공식 명칭이 무엇이든간에 국가안보 또는 사회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져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법률 및 제도, 그런 법률을 적용. 집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수사기관과 재판기관, 재판절차를 설치하는 법률과 제도"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면

서 그러한 법과 제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방콕회의가 끝난 후 KONUCH는 즉시 방콕에서 배포한 설문지를 다시 정리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 지역 비정부단체들에 보내는 한편 Interantional Commission of Jurists(ICJ), Asia Watch, Amnesty International 등 국제인권단체들에 대하여도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 지역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와 전문가들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KONUCH는 심포지움을 위하여 자료집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 자료집은 비엔나에서 열릴 심포지움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인권침해의 원인 중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는 국가보안법과 그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하여 비정부단체간 정보교류와 연대의 기초로 사용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심포지움이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섯 나라 정도의 사례밖에 발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자료집에는 가능한 한 많은 나라의 보고를 싣기로 하였다. 그 준비과정에서 KONUCH가 해외로 발송한 팩시밀리의 수만도 두 200회를 넘었다.



4. 이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확정된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사회 : Edward J. Baker - 미국 하버드 대학 연청연구소 부소장
 기조발제 : K.S. Venkateswaran -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퀸스대학교 법과대학. "아시아의 국가보안법 : 개관"

국가별 보고

한국 - 박원순 변호사. "국가보안법 - 한국 인권침해의 상징"

인도네시아 - H.J.C. Princen 변호사. "인도네시아의 국가보안법"

말레이시아 - Mohd. Nasir Hashim박사. "말레이시아의 인권과 내부안전법"

방글라데시 - Mostafa Farook, Adilur Rahman Kahn변호사. "방글라데시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스리랑카 - Kayananda Tiranugama, Lakmali Cabral변호사. "국가보안법과 인권 - 스리랑카의 경험"

이러한 발표 후에는 질문과 답변, 토론을 하고 유엔과 각국 정부, 비정부단체들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5. 자료집에는 가능한 한 많은 나라의 국가보안법을 소개하려 하였으나 결국 위에서 본 기조발제문과 5개국의 사례외에 "남아시아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Ravi Nair), "국가안보 국가 ; 태국의 경험"(Boonthan T. Verawongse), "버마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Kyaw Thi Hao, Myint Shwe)등 세 나라에 관한 글과 "국가안보인가 민중의 안전인가? 인권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제안"(조용환)이라는 글을 실었다. 이러한 준비외에 KONUCH는 이 행사의 홍보물로 이 행사만을 위하여 특별히 도안한 포스터와 유인물, 그리고 티셔츠와 손수건, 배지 등을 준비하였고 KONUCH를 돕기 위하여 참가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한국인 연대(International Korean Alliance for Peace and Democracy; IKAPD)'가 따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만장과 배지, 풍물을 준비하였다. 후에 KONUCH가 준비한 국가보안법 심포지움은 비엔나 행사기간 중 가장 잘 준비되고 조직된 모범적인 행사의 하나로 평가받았다. 한편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을 해 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6. 심포지움은 비정부단체 행사를 준비한 BIM(Boltzmann Institute of Human Rights)의 잘못으로 두 번이나 일정을 변경한 끝에 결국 6월 17일 오후 3시에 회의장인 오스트리아 센터 D홀에서 열렸다. 이 홀은 비정부단체의 전체 총회가 열린 곳으로 모두 2,0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인데 홀의 절반은 식당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나머지 절반을 이용하여 심포지움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는 단상 부근에 약 250개의 의자를 배치하여 식당 부분과 나누려 하였으나 식당쪽에 와서 음료를 들며 심포지움을 방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식당을 겸한 장소에서 열렸다는 점때문에 다소 산만한 단점이 있었으나 그만큼 행사가 많이 알려질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다.

심포지움은 사회자인 Edward J. Baker의 인사말로 시작하였다. 인도출신 변호사로서 벨파스트 퀸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전세계의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입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는 K.S. Venkateswaran은 아시아 대륙이 광대하고 많은 나라가 있듯이 이 지역의 국가보안법들도 다양하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은 법 자체의 가혹성뿐 아니라 그러한 법을 그 나라의 법원이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는 국가보안법이란 본질적으로 비상사태에 적용되는 예외적인 입법인

데도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법을 평상시에 적용되는 법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비상시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인권침해가 영구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일반적 특징으로 ①매우 넓은 범위의 행위에 대하여 광범위한 체포와 신문권, ②기소나 재판없이 구속할 수 있는 넓은 권한, ③개인 또는 집단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 ④막연하게 정의된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가혹한 처벌, ⑤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특별법원이나 특별절차, ⑥이러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그리고 ⑦비밀성 등을 열거하였다. 그는 이러한 법을 유지하는 근거를 “이데올로기적인 반대”, “군사정권에 대한 저항”, 그밖의 것들로 나눈 다음 첫번째 범주의 대표적인 나라로 싱가포르와 한국, 중국을 들고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싱가포르와 한국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반혁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비슷한 법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 관하여는 국가보안법과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안관찰법 등을 설명하였다. 두번째 범주의 나라로는 버마와 태국, 인도네시아의 예를 설명하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도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나의 생각으로는 한국이 첫번째와 두번째 범주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여러가지의 안보위험을 내세우며 이러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인도와 말레이시아, 네팔, 부탄, 이스라엘의 경우를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법을 통제하기 위하여는 입법적인 방법과 사법적인 방법이 있으나 모두 불충분하며 결국은 인권단체들이 이러한 법의 적용상황을 감시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하면서 아시아지역의 비정부단체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박원순변호사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의 순으로 각국의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들이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실체는 국민의 지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반대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하여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이런 법률들을 폐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예정된 5개국의 설명이 있는 다음 필리핀의 Sarmiento변호사가 “필리핀의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 과거와 현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된 것처럼 외부세계에 알려진 필리핀의 경우 실제로는 비슷한 성격의 많은 법령들이 여전히 남아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하면 필리핀의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의 발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압력에 부딪친 정부가 형식적으로는 이를 폐지하면서 그 내용을 일반 법속에 포함시켜 인권침해를 은폐하고자 하는 기도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였다.

이러한 발표후에 사회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관한 Amnesty International의 의견(South Korea - The test of practice: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human rights, AI Index: ASA 25/14/93)을 보고하였고 로버트 케네디 기념 인권재단의 대표인 Kerry Kennedy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인권침해 상황에 관한 국제인권단체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밖에도 케냐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이 나와서 연대사를 발표하거나 의견을 발표하였고 마지막에는 KONUCH와 발제자들이 준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문은 비엔나회의에 참여한 비정부단체들 사이에 커다란 호응을 불러 일으켰고 불과 3일

정도의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의 ‘5월 광장의 어머니들’을 포함하여 34개국의 83개 비정부단체들과 ‘아랍법률가 연맹’을 포함한 5개의 국제단체들이 서명을 하였다.

7. 심포지움이 끝난 후 오후 6시경부터 약 30분 동안 심포지움 참가자들은 오스트리아 센터의 정문 앞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국의 풍물놀이패와 만장의 인도를 따라 시작한 이 시위에서는 천정배변호사의 연설과 각국 대표들의 연대사로 이루어졌는데 현지 언론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8. 6월 22일에는 심포지움 참가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는 아시아지역에서 국가보안법이 모든 인권침해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법제도와 싸우기 위하여 이 지역의 비정부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투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연락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번 심포지움이 이 문제에 대하여 처음 열린 국제행사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심포지움에 대한 후속평가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평가작업은 심포지움을 준비한 KONUCH가 구체적으로 맡아 준비하되 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에 관한 공동 연락체계의 건설문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9. ‘국가보안법하의 인권침해’에 관한 결의문과 서명단체

결 의 문

유엔 주최 세계 인권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세계 각 지역 민간인권단체의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사 실 인 식)

1. 국가보안법이 전세계 인권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2. 나아가 국가보안법 집행을 책임지는 특별기관들이 인권침해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3. 국가보안법이 많은 경우 비상체제 및 민간독재나 군부독재의 영속화를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4. 국가보안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탄압하는데 쓰여져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5. 냉전시대에도 국가보안법을 합리화하는 데 실패한 바 있는 모든 왜곡된 이데올로기적 논리들은 더이상 설 자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6.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핑계로 심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사람들의 범죄를 추궁하지 않

고 면책하여 주는 관행은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인권교육을 위해서도 이롭지 못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 7.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장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 8. 끝으로 우리는 유엔 인권기구들과 국제 민간인권 단체들이 국가보안법에 따른 인권 침해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고 믿는다.

(결 의)

- 1. 각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를 즉시 전원 석방하라. 또한 자의적 체포, 불법구금, 고문, 불공정 재판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즉각 중지하라. 특히 국가보안법을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탄압하는 데 악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 2. 각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집행을 담당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안기부·보안사등 특별정보사찰기구나 특별법원 또는 특별형사절차를 폐지하라. 최소한 그러한 기관들을 엄격한 법의 통제를 받게 하라.
- 3. 각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최소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개정하라. 이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는 관련 국제인권조약,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제1선택의정서, 그리고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금지조약을 유보없이 비준하라. 나아가 이러한 조약들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라.
- 4. 국내 민간 인권단체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및 그 집행기관의 운용을 감시하고 그에 대한 공중의 경각심을 제고시킬 것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투쟁에서 공중의 지원을 동원할 것을 촉구한다.
- 5. 지역단위, 혹은 국제 민간 인권단체들에 대하여 정보교환, 공동연구, 국가보안법 철폐 공동투쟁등을 통해 서로 긴밀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 6.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 연구, 시정할 특별소위원회나 특별담당관을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 7. 유엔과 각국 정부에 대하여 각급 학생들과 시민 일반, 특히 관사를 포함한 모든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그것도 국가보안법상의 인권침해에 중점을 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 8. 끝으로 우리는 과거 또는 현재 국가보안 관련 특별법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의 정부에 대해 그러한 법에 따라 저질러진 모든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여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그 피해자에 대해 정당한 배상과 사회복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RESOLU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National Security Laws

adopted and signed at the Symposium "National Security vs. People's Security" during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on June 17, 1993 in Vienna.

Confirming that national security laws have played major roles in the deterioration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s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in the Asia-Pacific region,

Confirming further that specialized agencies for the enforcement of national security laws have been major violators of human rights,

Noting that national security laws have often been used primarily for nothing more than perpetuation of emergency system and of civilian and military dictatorships,

Noting that national security laws have been used to suppress not only civil and political rights but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as well,

Noting that the often strained ideological justifications of national security laws commonly made during the Cold War are no longer plausible,

Noting further that the impunity enjoyed by violators of gross human right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s has been a serious challenge to justi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for new generations,

Believing that the best way of securing national security is to guarantee human rights and democracy,

Believing further that U.N. human rights agencies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GO community have neither paid adequate attention to nor taken proper measures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resulting from the operation of national security laws,

We, the representatives of human rights NGOs from various parts of the world taking part in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Vienna in June 1993, hereby recommend the following resolutions:

1. We urge the governments concerned to immediately release all prisoners held under national security laws and to immediately stop all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including arbitrary arrests, unlawful detentions, torture, unfair trials, etc. In this regard, we especially demand that national security laws not be used to suppress workers' rights and labor unions' rights.
2. We urge the governments concerned to abolish specialized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intelligence and surveillance bodies or special courts, or special procedures, or to bring such agencies under the strict rule of law.
3. We urge the governments concerned to repeal or reform national security laws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ly established human rights standards. Moreover, we urge the government concerned to ratify the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especiall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its First Optional Protocol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ithout any reservations whatsoever, and to withdraw any reservations made under these instruments.
4. We urge local human rights NGOs to closely monitor the operation of national security laws and agencies and to raise public awareness and mobilize public support in their efforts to fight human rights abuses under these laws.
5. We urge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NGO community to clos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terms of information, research and efforts to reform both national security laws and the practices under them.
6. We urge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o establish a Working Group or to appoint a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the national security related laws.
7. We urge the U.N. and the respective governments to provide human rights education with special emphasis on abuse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to students and citizens in general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including judges in particular.
8. Finally, we call on all governments which have or have had national security laws to investigate all human rights abuses under them and punish those found guilty of such abuses and to provide just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to all victims of such abuses.

SIGNATORIES

** This is open to more signatories. Please come to the Hall K gate (Korea Display Desk) if you wish to sign.

ARGENTINE Asociacion Madres de Plaza do Mayo
 BANGLADESH Nation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Jatio Ainjibi Parishad (National Lawyers Council)
 Bangladesh Manobadhikar Samonnoyparishad (Coordinating Council for Human Rights in Bangladesh)
 Ain-O-Salish Kendra (Law and Mediation Center)
 Madaripur Legal Aid Association
 Resource Integration Center
 BHUTAN Association of Human Rights Activists
 People's Forum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Organization of Bhutan
 BURMA Burma Human Rights Committee
 CAMBODIA Cambodian Women Development Association
 INDIA South Asia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er
 Andra Pradesh Civil Liberties Committee (APCLC)
 Center for Socio-Legal Research and Documentation Service
 People's Union for Civil Liberties (PUCL)
 Federation of Consumer Organization - Tamilnadu (FEDCOT)
 INDONESIA Center for Human Rights Studies (YAPUSHAM)
 Foundation of Women Liberation
 Front Demokrasi Indonesia
 Indonesian Human Rights Center
 Indonesian Legal Aid Foundation
 Indonesian Forum for Environment (WALHI)
 Institute for Rural Development and Education (LP3)
 Institute for the Defense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GOs Forum on Indonesia Development (INGI)
 New Life Prison Fellowship
 Religion Forum for Human Rights in Indonesia
 Women Solidarity
 GERMANY Support Group for Political Prisoners in South Korea
 JAPAN Japan Civil Liberties Union
 KENY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Women Lawyers (FIDA)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Kenya Section
 Suara Pakyat Malaysia (SUARAM)
 MALAYSIA Inner Mongolian Human Rights Defense League
 MONGOLIA Human Rights Commission of Pakistan
 PAKISTAN Association of Relatives and Friends of Political Prisoners (KAPATID)
 Ecumenical Movement for Justice and Peace (EMJP)
 Families of Victims of Involuntary Disappearance
 Medical Action Group
 Philippines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 (PAHRA)
 Liberty International
 National Bar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Rep. of Korea The Korea NGOs' Network for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KONUCH)
 - MINBYUN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MINKAHYUP (The Family Association for Democracy)
 - Buddhists' Committee for Human Rights
 -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and Unification
 - Th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 The Korea Association of Democracy - Bereaved Families
 - NCKK Human Rights Committee
 - Institute for Democratic Legal Studies
 SRI LANKA Lawyers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SUDAN Sudan Human Rights Organization
 Sudanese Trade Union Alliance U.K.
 TAIWAN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Alliance of Taiwan Aborigines
 THAILAND Thongbai Thongpao Foundation (TTF)
 TUNISIA Renaissance Party
 UNITED KINGDOM Cathol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CIIR)
 British Coalition for East Timor
 Korea Ecumenical Education Programme (KEEP)
 USA Robert F. Kennedy Memorial Center for Human Rights
 ARAB LAWYERS UNION
 ASIA-PACIFIC PEOPLES FORUM ON PEACE AND DEVELOPMENT (ACFOD)
 INTERNATIONAL PLATFORM OF JURISTS FOR EAST TIMOR
 INTERNATIONAL KOREAN ALLIANCE FOR PEACE AND DEMOCRACY (IKAPD)
 LAWASIA

June 17, 1993

4.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단체 관련 활동보고

1993년 3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민간단체 인권대회(Asia-Pacific NGOs Conference on Human Rights)와 그 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역시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회의(Asia Regional Meeting)에 참가하였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민간단체들은 위 지역회의가 끝나는 날 아시아-태평양 민간단체 인권대회의 후속 작업을 수행하고 빈 세계인권대회에서 이 지역 민간단체들의 참여와 활동을 극대화하고 조직화할 목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민간단체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Follow-Up)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5개 소지역(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태평양) 별로 각 1명씩 뽑힌 5명의 대표와 위 민간단체 회의를 준비하였던 조직위원회의 구성단체 4개, 즉 Asian Cultural Forum on Development(ACFOD),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APWLD), Asian Women's Human Rights Council(AWHRC), Institute for Human Right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INHURED International)의 각 대표 등 9명으로 이루어졌다. 동북아 소지역에는 남.북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등 8개국이 포함되었는데 이 소지역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으로는 우리 인권대회 공대위의 대표가 선출되었다. 또한 위 민간단체들은 빈 인권대회 기간 중 그곳에서 각종 공동행사를 주최키로 결정하고 각 행사를 주관할 주제별 TASK 포스트를 선정하였다.

조정위원회는 결성 당일 회의를 열어 네팔에 본부를 둔 INHURED International의 대표인 Gopal Siwakoti를 사무국장(Secretary)으로 선출하고, 유럽공동체 의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캐나다의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Development(ICHRDD) 및 독일의 DIAKONISCES WERK(KED) 등 3개 기관 또는 단체가 아시아-태평양 민간단체 인권대회와 그 후속조치를 위한 재정에 총당하도록 출연하였던 미화 21만여불 상당액 중 위 인권대회를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조정위원회의 예산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빈 인권대회에 참가하기를 바라는 각 나라 민간단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소식지(Bulletin)를 몇 차례 발간하여 배포키로 하였으며, 빈 인권대회 기간 및 그 이전의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준비하고 조정하는 민간단체 공동기획위원회(Joint NGO Planning Committee)의 협조를 얻어 유럽공동체 의회 등으로부터 빈 인권대회에 참가에 필요한 비용(교통비 및 체제비)을 제공 받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단체의 대표 약 110명을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는 1993년 4월 19일부터 2주일 동안 제네바에서 모든 유엔가맹국 정부의 대표가 모여 빈 인권대회에서 채택할 최종 선언문을 기초하는 제4차 준비위원회에 조정위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각국 정부 대표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하였다.

조정위원회는 1993년 4월 8일 자로 첫 소식지를 발간하여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유럽공동체 의회 등으로부터 비용을 제공 받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단체의 대표를 선정하고 제4차 준비위원회에 참가하여 각국 정부 대표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애초에 계획하였던 사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위 준비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는 빈 인권대회 사무총장인 이브라히

마 팔(Ibrahima Fall)이 인권대회에서 채택할 최종문서의 초안으로 마련하여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방콕 민간단체 인권선언에 바탕을 둔 의견서를 작성, 배포하고 아프리카 및 중남미 민간단체들에게 전체 남측(북측이라 불리는 구미 선진국에 대응하는 뜻) 민간단체 회의의 열 것을 주창하여 공동 논평을 준비하는 등 전 세계의 어느 지역 민간단체들보다 더 활발하다고 평가될 만큼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조정위원회는 빈 인권대회 기간 중 그곳에서 벌일 공동행사를 준비하는 데에는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주제별 TASK 포스트로 선정된 단체들 대부분이 행사 준비를 게을리하거나 그 준비상황을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오지 않았던 데에 기인한 것이다.

조정위원회는 빈에서 민간단체 포럼부터 인권대회의 끝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 민간단체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정위원회는 민간단체 포럼이 열리기 하루 전인 6월 9일 아시아-태평양지역 민간단체 참가자 전체회의를 열어 빈에서 열리는 행사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고 이후 거의 매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를 전달하고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조정위원회는 대정부 로비팀, 문서 기초팀, 언론팀, 공동행사팀 등을 구성하여 활동케 하였고 전 세계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민간단체 연락위원회(NGO Liaison Committee)에 대표를 파견하여 전 세계 차원의 민간단체 활동의 조정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실제 조정위원회의 활동은 논의만 무성할 뿐 내실을 기하지는 못하였다. 각 팀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활동하였고 그 팀 내에서도 각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통제가 가하여지지 못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단체들의 공동행사 역시 준비과정에서부터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어 거의 모든 공동행사가 말로만 공동행사일 뿐 실제로는 주관단체의 단독행사나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대위가 주관하여 6월 17일 개최된 국가보안법에 관한 심포지엄과 6월 22일 개최된 문화행사는 가장 모범적인 공동행사로 평가될 만한 것이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아시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탄압의 실태가 생생하게 소개되었으며 40여개국 100여개 민간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의 철폐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이를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위 문화행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여러 나라의 음악과 춤을 공연하는 행사로서 이 지역의 수많은 참가자들에게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 나라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며 흥겨움과 연대감을 한껏 느끼게 하여 그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빈 인권대회 기간 중 조정위원회는 그 활동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나라 민간단체들로부터 그 조직의 비민주성을 지적 받았고 결국 6월 16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단체 참가자 총회는 각 나라 당 1명의 조정위원을 선정하여 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였다. 그럼에도 그 이후의 조정위원회의 활동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진하였다.

조정위원회의 활동이 부진한 것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단체들의 연대 의식과 조직 수준이 낮아 공동활동의 수행과 조정위원회의 통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조정위원회 자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사무국장으로서 선출된 Siwakoti는 그 임무를 거의 방기하다시피 하였고 특히 재정 문제에 관한 보고를 무한정 지체함으로써 다른 조정위원들의 불신을 얻게 되었다. 예컨대 조정위원들은 미리 빈에 도착하

여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사무국장은 이들의 숙소조차 예약하여 알려주지 않았고 그 스스로 아무런 연락 없이 예정된 날에 빈에 도착하지 않았다가 수일 뒤에야 도착하였다. 그 동안 조정위원들은 체제비를 마련하느라 힘을 낭비하였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정 문제에 대한 사무국장의 설명을 요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었지만 사무국장은 끝까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무국장은 6월23일 도리어 다른 조정위원들이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조정위원들 전원은 6월25일 그것을 반박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조정위원회는 빈 인권대회 자료집을 발간하려던 계획조차 포기하고 청산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다.

조정위원회의 활동은 대다수 선의의 민간단체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단체들의 공동 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참여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과 국제무대에는 그 선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활동가가 개입하여 각국 민간단체들의 공동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러한 공동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선의의 활동가들의 주도 아래 국제연대를 강화시키는 것을 앞날의 과제로 안게 되었다.

5. 여성의 목소리, 정신대문제의 부각

- 정대협이 유엔 세계인권대회 참가보고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테헤란 대회이후 25년만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계인권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개발과 인권의 관계, 여성문제, 원주민 등 소수민족의 문제 그리고 인종차별의 문제 등이 중요과제로 다루어졌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서는 이효재 공동대표, 김복동 할머니(정신대 피해자), 정진성 교수(조사연구위원장), 윤미향 간사(실무자), 신혜수 교수(국제협력위원장--UN) 등 5인이 참가하였고, 해외에서 정신대문제로 활동하고 있는 교포단체에서 김영호 목사(뉴욕 정대협 대표), 광상희 시인(뉴욕 정대협 위원), 전옥숙 박사(L.A. 정대협 공동대표), 엘리스 최(하와이)가 결합하였다.

본 회의 민간단체 부문 참가자들이 처음부터 고민한 것은 어떻게 하면 본회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반대로 자국의 인권상황이 열악한 나라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참가한 정부대표들은 어떻게 하면 본회의에 민간의 영향을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워 두 부문 사이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이 할 일은 민간단체회의에서 채택한 선언 자체가 본회의의 선언문에 반영되도록 하고 본회의의 선언문 초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꼭 고쳐져야 할 부분을 고치도록 로비를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민간단체회의의 3일 동안 참가자들이 모두 '유엔기구', '발전', '여성', '원주민', '인종차별'의 5개 분과로 나뉘어져서 토의하고 각 분

과별 선언문을 작성했다.

여성들은 여성팀을 만들어 대회선언문초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 수정안을 작성하여 로비팀이 그 수정안을 가지고 로비하는 전략을 폈다. 여성들은 2년 전부터 미국의 여성운동가 샬롯(Charlotte Bunch)을 중심으로 유엔의 인권 논의에 여러가지 이론적 실천적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어느 분야보다도 잘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여성분과는 '여성인권 침해에 관한 국제재판'을 6월 15일 하루종일 열어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전면적으로 부각시켰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5개부분으로 나누어, '가정에서의 폭력', '전쟁 중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피임,낙태문제)', '사회,경제적 인권침해', 그리고 '정치적 박해 및 차별'로 나누어, 한 부문당 5-6명씩 모두 25개국의 피해여성들이 참가하여 증언을 했다. 각 부문별 증언이 있는 후 이에 대한 판사의 판결이 있었고, 모든 증언이 끝난 후 종합판결이 있었다.

정대협에서는 '전쟁중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실례로 정진성 교수(정대협 조사연구위원장)가 정신대의 실상을 간단히 설명하고, 정신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생생한 증언을 했다. 부상당한 일본군에게 수혈하기 위해서 군위안부들의 피까지 뽑았다는 것을 듣고 청중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25개국을 참여시켜 여성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그 열기와 진지성에서도 모든 타 프로그램을 압도하여, 같은 시간에 진행된 다른 행사는 참가자가 없어서 진행이 안될 정도였다는 말까지 들었다.

정대협에서는 위의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외에 필리핀, 북한의 정신대관련 조직과 연대하여 아시아 여성포럼을 개최했다. 한국, 북한, 필리핀에서 정신대할머니 한분씩의 증언, 정신대 실

